

제31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(2023. 6. 22.)에서 의결된 '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'을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6월 23일

고흥군의회 의장 이 재 항

고흥군의회 규칙 제 2023-52 호

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.
- ④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비밀준수 의무)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7조제1항 중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”을 “윤리특별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 ① ~ ② 생략	제11조 ① ~ ② 현행과 같음
<u><신 설></u>	<u>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비밀준수 의무)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</u>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□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[본조신설 2022.1.13.]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,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.

-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